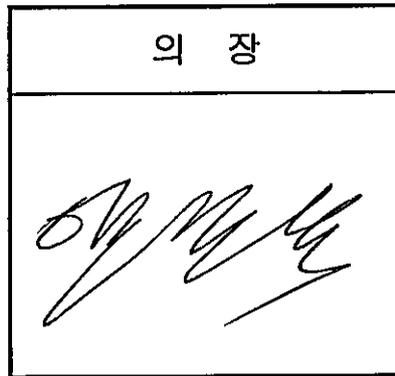


서울 속으로 한발 더!
시민 결으로 한뼘 더!

의원발의 의안 접수 및 회부



2018. 2.

서울특별시의회
(의사담당관)

의원 발의 의안접수 및 회부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(의안의 제출·발의)에 따라 의안이 접수되었기에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함.

접수의안

연 번 (의안번호)	의 안 명	주 요 내 용	발의·제출 (소관위원회)	비 고 (발의일)
1 (2388)	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상위법에 근거하여 관련 사항을 조례에 명기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공연 및 음식제공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함. - 관광특구 안에서 공개공지를 사용하여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제3항 신설)	이혜경 의원 (찬성 11명) (문화체육관광)	2018. 2.20.

